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들과 통합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로 통합(안 제9조)

별정직공무원 면직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상 ‘임용심사위원회’(신설 예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 등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휴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16. ~ 11.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이 안은 2023. 10. 16. 입법예고된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36호)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영안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필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면직심사위원회)”를“(면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를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면직심사위원회는”을 “임용심사위원회는”으로, “면직심사위원회에”를 “임용심사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서”로,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를 “임용심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 면직절차 운영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면직심사위원회) ①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면직절차) ① ----- ----- ----- 「공무원임용령」 제 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 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
② 제1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면직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 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된다.	<삭 제>
③ 면직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 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면 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 ----- ----- ----- - 임용심사위원회에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 ----- 임용심사위원회의 별정 직공무원 면직절차 운영 등에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5